



산업통상자원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6.11.)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수도권 외 지역*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 1.5단계를 연장하면서,**
 - *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예외
 -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.6.1.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.1.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드립니다.

○ 적용 기간 : 2021년 6.14.(0시) ~ 2021년 7.4.(24시)까지

○ 대상 지역 : 수도권 외 지역(13개 시도)*

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* 강원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 관내 개편안 적용 시·군 지역 제외

< 완화 불가조치 사항>
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*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

*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

①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

○ 조치 내용 : **집합금지**

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*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내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* 수도권 외 지역 중 2단계 적용 시·도(시·군·구)

○ 대상 시설 :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②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스포츠키팀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.2.15.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③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④ 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

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붙임 5.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⑤ 고위험사업장

-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8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⑥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-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

⑨ 그 외

- 종교시설
 - 방역지침 의무화
 - 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- 교통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 - 방역지침 의무화
- 국공립시설
 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 원칙, 이외 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제한 원칙
 - *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- 사회복지 이용시설
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- 기타시설
 - 대상시설: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마·경정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, 키즈카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·안마소, 국제회의장
 - 조치내용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**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.
 2.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 끝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

박혜수

과장

전결 2021. 6. 15.

김재준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697 (2021. 6. 15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